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dia: APA authorities accept customs valuation for transfer pricing purposes](#)

인도 과세당국 APA 승인 시 이전가격세제 목적상의 관세 평가 허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이하, "APA")과 관련하여 인도 과세당국은 인도 관세당국의 거래특별평가국(Special Valuation Branch, 이하, "SVB")에서 책정한 일부 수입물품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기존에 볼 수 없던 APA 를 타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운용에 있어 이전가격세제와 관세평가제도(이하, "Customs Valuation")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세제가 모두 독립 기업간 거래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대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반면 관세당국의 경우 수입에 대한 과소신고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당국과 관세당국은 각 당국의 과세논리를 납세자의 입장 보다 우선시하고 있어 납세자들은 이러한 당국들의 태도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과세당국은 APA 협상에 있어 이전가격세제 목적의 관세평가제도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과세논리를 넘어서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함과 동시에 관세당국도 수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의 협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09 April 2018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력을 통한 특수한 성격의 분쟁 해결 방안으로 APA 협상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PMG 의견

최근 몇 년 간 인도 과세당국은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 납세자들에게 APA 합의를 통하여 복잡한 이전가격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0건 이상 타결된 APA는 인도 APA 의 성공사례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세제 목적 상관세평가제도 허용은 APA 역사상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제출한 APA 신고서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IRS guidance on country-by-country reporting by "specified national security contractors"

"지정된 국가안보계약기관(Specified national security contractors)에 대한 미국 국세청(IRS)의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y)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 국세청(IRS)은 2018년 3월 31일 미국에서 지정된 국가안보계약 기관으로 분류되는 다국적그룹(MNE)에 대한 국가별보고서(CbCR) 최종 규정의 가이드라인인 Notice 2018-31호를 발표하였습니다.

배경

2016년 6월 30일부로 발효된 최종 규정에 따라 연결매출액이 850백만 USD를 초과하는 다국적그룹의 최상위 모회사가 미국에 소재하는 경우 Form 8975(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규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일반적 예외사항을 언급하지 않지만, 전문부터 최종 규정에 이르기까지 미 국방부는 국가별보고서 제출로 노출되는 특정 사실들이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고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tice 2018-31호

Notice 2018-31호에 의하면 IRS와 미 재무부(Treasury)는 미국 다국적 그룹의 지정된 국가안보계약기관의 수익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요건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 다국적그룹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결정됨)의 50% 이상이 국방부, 기타 미국정부기관 또는 보안기관 간 체결하는 계약이 차지하는 경우 "지정된 국가안보계약기관"으로 분류됩니다.

Notice 2018-31호는 미 국세청과 재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최종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개정될 규정은 Form 8975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국소재 다국적그룹의 지정된 국가안보계약기관이 제출해야 할 Form 8975 및 Schedule A (개인소득세의 개별공제)의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공 하고 있습니다.

- Form 8975의 추가 정보 작성란인 Part II 첫 부분에 미국소재 다국적그룹이 지정된 국가안보계약기관임을 명시
- Schedule A(Form 8975)의 Part I 에는 조세관할권 정보(Tax Jurisdiction Information)의 미국 전체 다국적그룹에 대한 연결 매출액 및 종업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Part II 에는 최종 모회사 (Constituent Entity)의 정보만 기입
- Schedule A(Form 8975)의 Part I 에는 조세관할권의 "과세되지 않는"(Stateless) 세금 정보를 기입하고 Part II에는 최종 모회사의 정보만 기입

IRS는 Schedule A (Form 8975)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정신고서에 대한 안내

지정된 국가안보계약기관이 이미 전년도에 대한 Form 8975 및 Schedule A를 제출한 경우 Form 8975 수정신고 여부를 체크박스에 체크 후 연방 소득세 수정신고서와 함께 Form 8975 및 Schedule A를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전산상으로 제출하지 않은 지정된 국가안보계약기관은 Form 8975 및 Schedule A가 수정된 소득신고서를 유타 주 오그던에 소재한 IRS 서비스 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Notice 2018-31호에 따르면,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사본으로 직접 제출한 경우 지정된 국가안보계약기관의 Form 8975 및 Schedule A 의 수정신고 기한은 2018 년 4 월 20 일 이며, 만약 국가별보고서를 다른 과세당국과 자동 교환하지 않게 하려면 2018 년 5 월 25 일까지 전산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United States: APMA program, APA statistics for 2017](#)

미국: APMA 프로그램, 2017년에 대한 APA 통계자료

2018년 3월 30일, 미국 국세청(IRS)은 2017년에 대한 APA 및 MAP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담은 Announcement 2018-08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7년 중 미국에서 진행된 APA에 대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nnouncement 2018-08은 3개의 Part로 구분되어 있으며, Part I은 APMA 담당부서의 구조,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한 정보를, Part II는 APMA의 통계자료, Part III는 2017년 수행된 APA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art 별 세부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Part I – APMA 담당부서의 구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

2012년 2월, APA 담당부서는 Chief Counsel 부서에서 IRS의 대기업/국제부서 소속의 이전가격운영 본부로 이전하면서 APMA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기준, APMA 담당부서는 55명의 팀 리더, 17명의 경제학자 및 10명의 시니어 매니저들을 포함한, 총 10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PMA 담당부서는 현재 워싱턴 DC 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Part II – APMA 에 대한 통계적 자료

2017년에 타결된 APA의 수는 총 116건이었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하여 30건이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신규 APA가 40%를 차지합니다.

진행 중인 APA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본, 인도 및 캐나다와 진행 중인 APA가 총 진행 중인 APA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2017년 APA의 통계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기와 같습니다.

	일방 APA	쌍방 APA	다자간 APA	합계
접수	14	86	1	101
타결	30	85	1	116
진행	57	321	8	386
갱신진행중	22	48	0	70
갱신	29	133	2	164
취소	0	0	0	0
철회	1	6	1	8

Part III – 2017에 진행된 APA에 대한 설명

2017년에 타결된 APA의 절반 이상은 모회사가 미국이 아닌 다국적

기업과 미국에 소재한 자회사간의 거래입니다. 또한, 2017년에 타결된 APA의 거래 유형은 대부분 재화거래 및 용역거래이었으나, 무형자산 사용거래의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2017년 타결된 APA 중, 'roll-back' 연도를 적용한 건은 22%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의 5년을 대상기간으로 접수가 된 APA이며, 납세자와 IRS가 협의하여 추가연도를 적용한 건입니다.

KPMG 의견

APA 통계자료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7년 APA 타결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2017년: 116건, 2016년: 86건).
- 2017년 APA 타결 대상 국가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총 타결 건수의 57%를 차지하였습니다(2016년: 54%).
- 인도와의 APA 접수 건수의 비중이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2016년: 34%, 2017년: 21%)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for UK MNEs

영국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 규정

영국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및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국 과세당국(HMRC)은 최근 OECD 권고안을 반영하여 guidance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전가격의 문서화가 거래 및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 혹은 복잡성에 비례해야 하며, 수행하는 거래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에 대한 영국의 엄격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은 해당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구비해야 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모기업은 해당 소재국의 이전가격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별보고서(CbCR)와 함께 해외 세무당국으로부터 통합기업보고서를 공유할 것을 요청 받을 것으로 예상
2. Guideline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은 다국적기업의 세무 이슈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영국 세무당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접근성이 바뀔 것으로 예상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DRAFT